



하이잉기업집체유한책임공사 VS 우시시양성의학영상유한 책임공사, 모산취에, 우룽바이, 구아이위엔 상업비밀침해 03 분쟁 사건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민인법원	사건번호	(1999) 知终字第3号
판결 일자	2001년 2월 23일	판결 결과	원고 승(권리자 승)
원심원고(피상소인)	하이잉기업집체유한책임공사		
원심피고(상소인)	1. 우시 시양성 의학영상 유한책임공사, 2. 모산취에, 3. 우룽바이, 4. 구아이위엔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20조, 민법통칙 제130조		
참조 판례	장쑤성 고급인민법원(1997) 苏知初字第3号		
영업비밀	초음파 관련 선형배열탐촉자 제조방법 및 공정 관련		
키워드 (Keyword)	청구의 확장(增加诉讼请求), 반소(反诉), 별소(另行起诉), 증거조사(质证), 감정의견(鉴定意见), 손해배상(赔偿损失), 이득액(利润), 사죄광고(赔礼道歉)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하이잉기업집체유한책임공사(이하 ‘하이잉공사’)는 초음파 선형배열 탐촉자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후 3.5 MHz 선형배열 탐촉자 조립을 이용한 초음파 진단기를 생산하여, 시장판매를 통해 비교적 높은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

모산취에, 우룽바이, 구아이위엔은 하이잉공사를 사직한 이후, 우시 시양성 의학영상 유한 책임공사(이하 ‘시양성공사’)를 설립하여 시양성 500모델 초음파를 생산 판매하였다. 하이잉공사는 시양성공사가 생산한 시양성 500모델 초음파에는 자신의 선형배열 탐촉자 제조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제조기술이 자신의 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이잉 공사는 원심 피고들에 대하여 선형배열 탐촉자 관련 기술 비밀 침해를 이유로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이 하이잉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피고들에게 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죄 명령 등을 명하였다. 이에 원심 피고들이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 (피상소인)	⇔	원심 피고 (상소인)
원고는 배열탐촉자 제조방법 및 공정과 관련하여 상업비밀을 가진다.		원고의 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피고의 상업적 명예와 경제손실에 대한 배상판결이 필요하다.

04 판결 요지

원심 원고 하이잉 공사가 주장하는 3. 5MHZ 선형배열 탐촉자의 관련 기술은 원고의 노하우 기술 정보에 속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관련 정보는 상업비밀로 인정된다.

원심 피고 모산취에, 우롱바이, 구아이위엔은 하이잉공사가 연구제작한 초음파의 주요기술 연구원으로, 원고가 생산한 초음파의 상술한 상업비밀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시양성공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 원천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하이잉 공사의 상업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즉시 하이잉 공사의 상업비밀 사용을 정지하고, 하이잉 공사의 경제적 손실을 연대하여 배상하고, 공개사과를 진행하고, 안전 수리비를 부담한다.

05 Key Point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① 권리자의 손해액, ② 손실액 계산이 어려울 경우, 침해자가 권리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에서,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액은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기간에 권리침해로 인해 얻은 실제이익을 가리키고 '영업이익'을 계산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